

제1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(제2차 본회의)

2011. 3. 14.(월) 10 : 00~

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

=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=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	-----	2
2.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-----	6
3. 거창군 애우 배넷소 대부 조례안	-----	10
4. 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	-----	15

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
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2월 28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3월 3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3월 11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진입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호를 위한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(2010. 11. 24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,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,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거창군과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)
-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과 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(안 제6조, 제7조)
-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촉진에 관한 협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·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-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 범위와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(안 제11조, 제12조)
-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따른 절차와 조건 등의 부과,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함 (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)
-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둠(안 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진입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호를 위한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(2010. 11. 24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,
-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,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,
- 「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」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.
-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 - (1) 안 제1조~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거창군,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하기 위한 필요조항이며,
 - (2) 안 제2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과 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(3) 안 제3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촉진에 관한 협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·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 (4) 안 제4장은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(5) 안 제13조~제15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따른 절차와 조건 등의 부과,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
- (6)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- 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1 - 14>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2월 28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3월 3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3월 11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자체 「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」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
회의 폐지 권고(2010.4.21)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
현행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식을
창업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개선·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
시장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는
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- 2000년부터 추진해 오던 「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보조금 폐지 권고(10.4.21)에 따라 종료하고 업체 수혜 효과가 큰 농공단지 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군 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18조 삭제)
 -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00명 이하인 기업의 해외품질규격 인증을 위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조항 삭제
-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보조하는 현행 지원 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창업 성공률 향상을 도모함(안 제19조의3)
- 창업보육센터 지원방법 변경
 - 현행: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지원
 - 변경: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이나 행정지원 및 창업동아리·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드는 비용 지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지자체의 「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」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권고(2010. 4. 21.)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
- 현행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식을 창업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개선·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,
-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「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-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 - (1) 2000년부터 추진해 오던 「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보조금 폐지권고(2010. 4. 21.)에 따라 종료하고 업체 수혜효과가 큰 농공단지 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군 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(제18조 삭제)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(2) 안 제193조의3(창업지원)은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보조하는 현행 지원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창업 성공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.

(3)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2월 28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3월 3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3월 11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배넛소의 대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 되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, 거창군 애우(艾牛)의 사육기반 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.
- 배넛소의 대부대상이 되는 농가와 대부 제외대상 농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
- 대부대상: 군 관내 거주자로서 한우사육기반 시설 등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,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마을이장·개발위원장·노인회장 모두의 추천이 있어야 함.
 - 대부 제외대상: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거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신청농가
- 배넛소의 대부 신청 및 대부대상 농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, 제5조)
- 배넛소를 대부받으려는 농가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육 장소를 관할하는 읍·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고, 배넛소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 2명 이상으로 보증하여야 함.
 - 배넛소 대부대상 농가는 거창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·선정토록 함.
- 배넛소의 대부두수와 대부기간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배넛소는 농가당 3두 이내로 대부하고, 대부기간은 배넛소를 대부받은 날부터 30개월 이내로 함.
- 배넛소의 상환 및 상환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과 배넛소 사육농가의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)

- 배넷소 사육농가는 대부기간 내에 생후 6개월령의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받은 두수대로 현금으로 상환하고, 성축은 사육농가의 소유로 함.
 -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함.
 - 사육농가는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관리상의 변동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함.
- 배넷소 대부계약의 해제사유와 사육농가의 손해변상 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- 사육농가가 생후 6개월령의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, 배넷소의 관리상 책임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넷소를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대부받은 배넷소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.
 - 군수는 사육농가에 대하여 상환기한 이전에 대부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, 사육농가의 귀책사유로 배넷소의 도난·폐사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육농가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배넛소의 대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된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 및 소득창출을 도모하고,
- 애우(艾牛)의 사육기반 확대와 친환경 농업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「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안」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.
-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 - (1) 안 제1조~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사항으로 필요사항이며,
 - (2) 안 제3조~제5조는 애우 배넛소의 대부대상과 대부 신청 방법 및 대부 대상농가의 선정에 따른 조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(3) 안 제6조는 애우 배넛소를 농가당 3두 이내로 하고 대부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됨.
 - (4) 안 제7조~제8조는 애우 배넛소의 상환방법과 공제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으로 부합하다고 사료됨.
 - (5) 안 제9조는 애우 배넛소를 대부받은 농가가 하여야 할 주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(6) 안 제10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환기간을 연장토록 정한 것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(7) 안 제11조는 애우 배넷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1호부터 4호까지 정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대부분은 배넷소를 반환해야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(8) 안 제12조는 사육농가에 대하여 상환기간 이전에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조항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.
- (9) 안 제13조는 사육농가의 귀책사유로 배넷소의 도난·폐사 등의 손실 시 손해를 변상하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(10)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2월 28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3월 3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3월 11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농업전문 기술교육으로 거창군 농업을 선도할 창조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거창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대학의 명칭, 위치 등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
- 대학의 조직구성과 학장 등의 임무,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2장 대학기구로 규정함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
-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심의·조정기구로서 설치하는 대학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)
- 대학의 입학자격과 등록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과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, 교육과정의 편성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, 졸업 및 졸업생 우대에 관한 사항, 재학생 상벌 및 학칙의 제정 등 학사 운영에 관하여 제4장에서 규정함(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)
- 그 밖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5장 보칙으로 규정하고, 종전 거창사과대학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시행사항을 부칙 경과조치 규정으로 둠(안 제19조, 제20조, 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「농촌진흥법」 제2조제3항에 의거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특화 작목 중심의 농업전문 기술 교육으로 거창군 농업을 선도할 창조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거창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「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」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.

-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 - (1) 안 제1조~제2조(목적 및 설치)는 조례의 목적과 대학의 명칭, 위치 등 그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필수 조항이며,
 - (2) 안 제3조~제5조(조직, 학장 등의 임무, 강사의 위촉 등)는 대학의 조직 구성과 학장 등의 임무,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 - (3) 안 제3장(대학운영위원회)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심의·조정기구로서 설치하는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(4) 안 제4장(학사운영)은 대학의 입학자격과 등록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과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, 교육과정의 편성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, 졸업 및 졸업생 우대에 관한 사항, 재학생 상벌 및 학칙의 제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- 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